

강정혜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 뜨거운 가슴을 가진 법률 전문가 필요 –

신창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심사관을 법률 전문가로 충원하여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정혜 교수의 제안에 공감한다. 인과 관계, 개연성이론, 입증책임이론, 과실 또는 무과실 책임이론, 연대배상,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상계, 이중 손해액 문제, 손익상계, 손해배상액의 감경 등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가슴이 뜨거운 법률 전문가를 충원했으면 한다. 분쟁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겪은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하겠다.

첫째, 경인고속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고속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소음을 측정해 보니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주거지역 도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 됐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만류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인 도로공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은 전례가 없다는 점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전국의 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이 앞 다투어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 이냐 하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배상결정 후에 벌어질 사태를 걱정하는 직원들에게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라는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예산부족을 평계

* 환경분쟁연구소장

로 고속도로 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외면할 거냐? 예산이 없다면 통행료를 올려서라도 방음터널이나 저소음 포장, 무인속도감시기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일이 피해를 피해로 인정하고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직원들을 설득하여 배상하도록 결정했고 이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지만 직원들이 우려하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나 개연성이론 등의 법률지식도 필요하지만 관행과 권위에 도전하는 뜨거운 가슴도 필요하다.

둘째,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위층에서 들리는 발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의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건축주인 시공회사를 상대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역시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심사관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으로 규제하는 소음이 아니고 따라서 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의견이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관계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행정규제기관이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준사법기관이므로 환경관계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을 찾아서라도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민법에는 건축물의 하자보상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과 상린관계에 의한 이웃주민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건교부 소관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건설기준에는 바닥충격음 방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층 거주자의 발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리는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충격음 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건축주의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하자보수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세울 수 있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층간소음 피해에 관한 상담이 폭주하면서 위층 거주자나 건축주를 상대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가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이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단계에서 바닥충격음 방지를 의무화하는 행정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사례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부나 기업의 입장에서 법령을 해석하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내고 적용하여 방치된 피해를 구제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노력은 냉정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함께 가진 법률 전문가일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